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2가단1028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이인영

변 론 종 결 2022. 12. 13.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1. 가.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2021. 7. 12.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에 대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7. 접수 제2135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297,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14.까지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B은 위 신용보증서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21. 4. 9.까지로 연장되었고, 보증금액은 24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B은 2020. 11. 24. 부실처리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2020. 11. 24. 중소기업은행에게 B의 대출금 채무 245,065,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20. 10. 19.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5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과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원금 245,863,582원, 개시전 이자 875,666원 합계 246,739,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 채권이 그대로 시인되었다.

마. B은 위 회생절차에서 기존에 제출하였던 회생계획안 및 그 수정안의 제출을 철회하여,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칠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원으로부터 2021. 10. 19. 자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B은 2020. 3. 31.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증거금으로 6,9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 접수 제7988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로받았다. 사. 그 후 B은 2021.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7. 접수 제213571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아. B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1)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권리는 최소 9,800~9,9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6,900~7,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라는 C의 권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B은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이며, 그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태원

별지